



재미대한태권도협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요약

개정취지

본 협회는 재미대한체육회의 중앙경기단체로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 본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아울러 본협회 실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음.

정관연혁

- 2007. 6. 25. 정관제정
- 2013. 6. 21. 1 차 정관개정
- 2017. 3. 16. 2 차 정관개정
- 2019. 6. 22. 3 차 정관개정

주요개정(안)

○ 정관 설치 근거 마련

- 기존 본 협회 정관은 설치 근거가 불분명 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, 재미대한체육회 산하 중앙경기단체로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

○ 선거시행세칙 규정 마련

- 그 동안 본협회 선거세칙 미비로 재미대한체육회 선거세칙을 준용하여 사용 함으로서 회장 선거 등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, 선거세칙마련으로 선거업무의 공정성 마련

○ 지회의 의무중 지회비 인하 조정(2019 년 4 월 서면결의)

- 종전 500 불에서 200 불로 지회비를 인하 함으로서 지역태권도협회 부담 경감

○ 지회의 가맹절차 및 요건 명확

- 지역태권도협회 가맹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 미연에 방지

○ 본 협회 조직의 세분화

- 본 협회 조직(본부, 대의원, 이사, 감사, 각종위원회, 위촉위원 등)의 업무분담 세분화

○ 사무국 설치 마련

- 본 협회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